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69 | 2025.01.13. (2025.01.06.~2025.01.1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1.06.~2025.01.12.)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4개 부처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합동 업무보고가 실시되었으며, 당면 현안에 대응한 부처 핵심 과제를 선별하여 부처 책임하에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환경부>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수도사업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실지명 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한 중소·중견·대기업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4인)**」,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5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28인)**」,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등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발주청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운영위>, <행안위>, <국토위>, <정보위>에서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고, <교육위>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법사위>와 <문체위>에서는 법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주요부처별 업무보고)」실시(관계부처 합동) 6
-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0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부) 10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0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0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1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수도권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2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우주항공청) 12
- 부당특약 고시 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1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1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1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6인) 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 16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17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1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4인) 1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5인) 18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28인) 18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1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5인)	1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19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20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21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2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2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23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3인)	2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3인)	24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2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1인)	2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5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6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1.06.~2025.01.12.) [바로가기](#)

- **[지적재산권]** 저명한 스케이트보드인 ‘마크 곤잘레스’가 창작한 엔젤 도안 및 서명에 관한 권리가 마크 곤잘레스에게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은 사례
- **[보험]**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존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통합 및 정비
- **[ESG]**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8 (2025년 1월 2째주)
- **[지적재산권]**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쿼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주요부처별 업무보고)」실시 -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4개 부처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합동 업무보고 - 당면 현안에 대응한 부처 핵심 과제 선별, 부처 책임 하 차질없이 추진	2025-01-08
---------	--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4개 부처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음.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를 선별하여 논의한 결과,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는 미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①민관 협력으로 대미 경제외교 추진, ②수출 비상 상황을 타개할 수출대책 마련, ③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석유화학 사업재편 가속화, ④전기 수요 급증에 대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

첫째, 미국의 관세·비관세 조치 구체화 가능성, 바이든 정부 보조금의 변경·폐기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정부에서는 각 부처 각 급에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기업, 경제단체 등 경제계의 역할도 적극 필요한 바, 민간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 외교노력도 산업부 중심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음

둘째, 금년 수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월중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추가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하였음. 특히, 권한대행이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여 수출 비상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음

한편,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말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경쟁법의 목적도 고려하면서 공급과잉 산업의 사업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음

첨단산업 등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최대한 조속히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확정되도록 할 계획임. 이를 통해 전력설비를 신속히 확충해 나가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내수시장 활력 회복은 물론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함

첫째,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임.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인 5.5조원을 발행하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200곳을 추가 지정하여 전체 550곳으로 확대함. 동행축제도 금년에는 계절별로 총 4회 개최로 확대(기존 3회 개최)하고, 최초 개최시기도 5월에서 3월로 당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역대 최대수준인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함

둘째, 약 9만명 이상의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방안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또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영세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통합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도입할 계획임

셋째, 최근 고환율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수입 중소기업을 위해 최대 1조 5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함. 환율변동을 반영한 납품대금 연동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단기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을 지원하게 됨

넷째, 벤처투자 시장의 빠른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1분기에 앞당겨 시행하여 1.9조원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펀드 1조원도 추가 조성하여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13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AI 확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디지털 기반 제조역량을 제고함. 이를 위해 (가칭)중소기업 AI 확산법과 (가칭)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을 6월까지 입법발의할 예정이며, 1,700개 디지털 공장을 구축하고 제조 AI센터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임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①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②가맹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 도입, ③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함

우선,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고물가·고환율 등에 따라 커진 자금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유통 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하도급 분야에서는 제3의 보증회사를 통한 지급보증과 하도급을 의뢰한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함.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과 별도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대금정산 기한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단축을 추진할 계획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 창업희망자·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하고 창업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 이는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등록 심사에 장시간 소요되어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가 정보를 신속히 공시하도록 하고, 추후 엄격한 사후점검을 통해 허위 공시가 적발되는 경우 시정·제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안전망 확충도 강화할 계획임. 결혼 장벽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과다한 결혼비용)’ 개선을 위해 주요 예식장·대행사의 가격정보를 소비자원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분기별로 제공함. 가입 소비자 892만 명·선수금 9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상조 분야 소비자보호도 적극 강화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9대 정책과제**를 추진하며, 특히 아래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더욱 속도를 높여 추진할 계획임

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상담·신청 절차를 조기에 마련('25.2월~)**할 계획임. 당초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금년 3~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 前이라도 프로그램의 지원 여부 등에 대해 2월부터 상담을 받거나 사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은행권과 협의할 예정임

② **정책서민금융도 더욱 신속·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내수경기 위축 등 서민층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여 금년 1월부터 서민금융 상품 한도를 확대하고 연간 공급규모 확대 계획(10조원 → 11조원)에 따라 연초부터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음

③ **역대 최대 수준인 총 247.5조원의 정책금융(산은·기은·신보·기보) 공급도 더욱 속도감을 높여 집행**할 예정임. 1분기 중 67조원(연간 목표액의 27%) 이상, 4월까지 평년대비 최대 10조원 확대된 95조원 이상(연간 목표액의 38%) 집행하는 등 상반기 중 최대 60%를 신속 집행하기로 하였음

④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하여 국내 증시 분위기를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음. 밸류업 주주환원 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고, 상장유지 요건 강화 및 상폐 절차 효율화 등 기업 밸류업 추진에 핵심과제인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당초 '25.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여 유관기관 공동 세미나를 통해 1월 말에 발표할 예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발표**
- 2025년 총 862억원 투자로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2025-01-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일 확정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1월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를 추

진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임

올해는 기존 연구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첫째,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함**. 기술개발과 실증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기술분야별 수요기업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둘째, **핵심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추진함**. 지난해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제품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 등을 마련하여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셋째,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기획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예산 확대를 지속 추진함**. 학회, 출연연, 기업 등과의 개방형 상시 연구개발 사업기획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기존사업의 일몰, 종료 등으로 인한 예산 공백 문제를 해소할 계획

한편, 202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국제 연구개발 대표사업(글로벌 R&D 플래그십 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힘

먼저, 무탄소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무탄소 발전원을 활용한 핵심 에너지 신기술 확보를 통해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25년 57억원)과 함께, 무탄소 에너지와 연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전주기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고도화’ 사업(’25년 42.75억원) 등 2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으로는 예측·대응이 어렵고,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후재난을 신속·정밀하게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 기후기술개발 원천연구 사업’(’25년 31억원)을 신규로 지원함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07 시행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이관할 때에는 그 재산의 대장가격 외에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의 재산 가격 기준에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자한 대상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그 대상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7-08 시행 예정
-----	----------------------------	------------------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07 시행
---------	-----------------	---------------

자가용전기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이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신 그 설비가 소재한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력거래 허용량의 한도를 ‘연간 총 생산량의 50퍼센트’에서 ‘연간 총생산량의 30퍼센트’로 축소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07 시행
-------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추진방식이 다양해지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가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자체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시·도 간 공동협력사업이나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심사 주체를 별도로 정하는 등 투자심사 주체를 변경·조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국가가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제외 대상으로 하던 것을 국가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07 시행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산지의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그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 채석단지의 활성화 및 토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중 산림생태계 보호 등의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는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할 수 없던 것에서 앞으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채석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포함하여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할 수 있도록 채석단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1-10 시행

식품 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3호, 2024. 12. 31. 공포, 2025. 1.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에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해야 하는 오염예방조치로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기, 그 제조·가공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에 대한 소독·교체 및 세척, 종업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된 안내 및 지도를 정하며, 오염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1.08. ~2025.02.19.

2024년 10월 22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수도사업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환경부 수도기획과 \(전화: 044-201-7130, 팩스: 044-201-7130\)](tel:044-201-7130)

우주항공청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1.06. ~2025.02.17.
-------	---------------------	-----------------------------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478호, '24. 10. 22. 공포, '25. 4.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및 조건(안 제21조의4 신설)

-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을 별표1에 규정
- 투자진흥지구 지역 조건을 「우주개발진흥법」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별표1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정함

②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규정 (안 제21조의5 신설)

-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 또는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절차 규정 (안 제21조의6 신설)

④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방법 규정 (안 제21조의7 신설)

-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투자 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절차 규정 (안 제21조의8 신설)

-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10년(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경우는 5년)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청문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⑥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규정 (안 제21조의9 신설)

- 투자진흥지구 내 매입 및 시설의 건축 시 그 필요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문의처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기반과 \(전화: 055-856-4351\)](tel:055-856-4351)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고시 일부개정안

2025.01.09.
~2025.01.31.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여,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부당한 지급 유예 약정을 신설

-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유예 약정 등을 포함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금지됨을 명확히 함

②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을 고시에 반영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200-4956, 팩스: 044-200-4977\)](tel:044-200-4956)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2025-01-08 발의

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전심의 등을 위한 증인·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및 제15조)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2025-01-10 발의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는 점과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 때문에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 기관 중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으며, 이에 따라 종이 통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 금융 거래와 전자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서면 통지는 종이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ESG 경영기조에 역행하는 활동이므로 특별한 조건 없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려는 것임 (안 제363조 등)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2025-01-10 발의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항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2025-01-09 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는 납세번호 부여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납세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연인인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자연인의 성명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 또한 발생하였음

이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로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3 조제1항 후단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2025-01-06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비수도권의 집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핵심이라는 점

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한 중소·중견·대기업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9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6인)

2025-01-07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당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85조의6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

2025-01-07 발의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그 평가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자사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3조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2025-01-06 발의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 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안 제14조의3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2025-01-07 발의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 업체로써 사고 발생 시 금전손실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35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4인)

2025-01-08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서비스의 확산과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서비스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제2항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5인)

2025-01-10 발의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28인)

2025-01-06 발의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보임. 이는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보조금 제공, 기금 마련, 세제 혜택 등으로 장기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고, 정책 대상도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영세한 규모로, 시중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해 대규모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존속성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지역 불균등 발전의 문제 및 금융 소외 문제, 그리고 시중금융기관의 지역 내 독과점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앙 종속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2025-01-06 발의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다양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화·웹툰·애니메이션처럼 시각예술과 문학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분류되고 있음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산업이 빠르고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명확히 주장하고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저작물의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하여 만화·웹툰·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5인)

2025-01-08 발의

현행법은 영화관의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예고편이나 광고영화의 상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일반적으로 영화 관람 시 다수의 광고 및 예고편이 상영되어, 관람객이 원하지 않는 광고 및 예고편영화 등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의 영화 감상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으로 하여금 실제 영화상영시간을 광고 및 예고편영화의 시간과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등에 공지 및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제3항제3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2025-01-07 발의

최근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연구장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납부한 전기료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16조제6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2025-01-08 발의

현행법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까다로운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인하여 지정 현황이 저조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업종 간 매출액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의4)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5-01-09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안정사업을 위하여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등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수입·수출 정책과 보조금 제도로 인하여 낮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실제 대기업으로 납품되는 비율이 낮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의4제3항제6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2025-01-09 발의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5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2025-01-06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에 방활동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2025-01-08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 그 영업정지가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규모가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과징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2025-01-08 발의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광고 규제의 대상이 '제품(제조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물이 아닌 사업활동(에너지 생산 등)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여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일례로, 1기당 시민 40만명과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 최대 유발시설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스스로를 '친환경 에코 발전소'로 홍보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됨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 한편,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곧 기업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현행법상 녹색기업,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등이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작성·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소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근절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조, 제16조의2, 제16조의8, 제16조의10, 제16조의11 등)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2025-01-09 발의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후대응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2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3인)

2025-01-10 발의

현행법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접근 방식으로, 모든 단계에서 순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포장재의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설정하는 등 지속 가능성과 자원 효율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및 순환 연료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순환 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들이 순환 원료 사용을 지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순환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설계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로 하여금 순환 연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적인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 제16조)**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3인)

2025-01-07 발의

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 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 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자동차 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의2제2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의원 등 13인)

2025-01-08 발의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사업 관리를 수행하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으나, 국내 건설사업관리는 현재 시공단계 위주의 감리업무와 단순한 지원업무만을 수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설계·시공 단계에서만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청이 설계 전부터의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발주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신공학과 같은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 건설사업관리 외에도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 역할이 필요하나, 발주청이 이를 도입 및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발주청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9조)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1인)

2025-01-08 발의

현행법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건수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이행강제금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도록 가중부과율의 하한을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안 제80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025-01-09 발의

플랫폼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 여객자동차법에도 플랫폼사업제도가 도입(2021. 4. 8 현행법 개정)된 이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형성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호출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 대형 플랫폼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국민과 택시기사로부터 과도한 중개요금을 수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플랫폼운송중개사업과 같이 여객자동차법으로 허가 및 면허,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여객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고(안 제49조의20 신설),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명령하고(안 제79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으로써 대형화된 플랫폼의 불공정 호출료 배분, 배차 등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025-01-09 발의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5-01-09 발의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승객이 강제로 탈출구를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제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6조)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전체회의	1/17(금) 10:00	- 현안 질의
법사위	전체회의	1/13(월) 10:00	- 고유법 의결
교육위	전체회의	1/17(금) 10:00	-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행안위	전체회의	1/13(월) 10:00	- 현안 질의
문체위	체육관광법안 심사소위	1/15(수) 14:00	- 법안 심사
	문화예술법안 심사소위	1/16(목) 10:00	- 법안 심사
복지위	전체회의	1/14(화) 10:00	- 법안 상정, 현안 질의
국토위	전체회의	1/14(화) 10:00	-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 보고
정보위	전체회의	1/13(월) 10:00	- 현안 보고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3(월) 10:00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서미화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3(월) 14:00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	박충권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4(화) 10:00	「POST 제평위 시대의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	최형두·김장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5(수) 10:00	(선수금 10조원…제2의 티메프?)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 를 위한 국회 토론회	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15(수) 10:00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장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5(수) 13:30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 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현정·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1/16(목) 10:00	항생제 다제내성균 요로감염의 효과적 통합 대응체계 구축 을 위한 정책토론회	박희승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7(금) 09:30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 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김주영·김윤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7(금) 10:00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 혁방향	안도걸·김태년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1/13(월)	「최신외국정책정보」제1호 발간	국회도서관	
	1/15(수)	「금주의 서평」제712호(2025-3호) 발간		
	1/14(화)	「NABO Focus」제87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13(월)	‘발전용댐 용수 활용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이슈와 논 점)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6(월)	「팩트북」제114호	국회도서관	
	1/8(수)	「금주의 서평」제711호(2025-2호)		
	1/7(화)	「NABO Focus」제86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1.06.~2025.01.12.)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7(화)	지적재산권	저명한 스케이트보드인 ‘마크 곤잘레스’가 창작한 엔젤 도안 및 서명에 관한 권리가 마크 곤잘레스에게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은 사례
1/8(수)	보험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8(수)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존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통합 및 정비
1/8(수)	ESG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
1/10(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8 (2025년 1월 2째주)
1/10(금)	지적재산권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